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15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정동영·김문수·황정아

박민규 · 최민희 · 장종태

이훈기 • 민형배 • 안호영

윤준병 · 김우영 · 조인철

김 윤·박용갑·김준혁

이정헌 • 박지원 • 이건태

이해민 • 허성무 • 박지혜

박정현 • 박홍근 • 김 현

권향엽 · 정진욱 · 소병훈

안도걸 • 이광희 • 정일영

황명선 · 위성락 · 김교흥

문금주 • 신영대 • 이원택

김성환 의원(3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 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인공지능・반도체・이차전지・디스플레이・바이오 등의 산업

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,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 신설).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병무청장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산업 및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(이하 "첨단전략산업"이라 한다) 분야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대기업(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기업 계열사(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2.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기관
  - 3.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개발업 수행업체
  -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정원

- 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.
- ⑤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등
	에 관한 특례) ① 병무청장은
	제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
	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
	공지능 산업 및 「국가첨단전
	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
	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
	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(이
	하 "첨단전략산업"이라 한다)
	분야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
	지정업체에는 다음 각 호의 업
	체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
	<u>야 한다.</u>
	1. 대기업(「대・중소기업 상생
	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
	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
	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기
	업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
	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
	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

한다. 이하 같다)

- 2.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기관
- 3.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개발업 수행업체
-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.
- ⑤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참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및 산업기능요원의 자격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